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02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박성훈 · 이현승 · 고동진

김성원 · 이상휘 · 김 건

서명옥 · 김승수 · 김기웅

한지아 · 조경태 · 김도읍

박충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관은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소유권의 포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다.</u>
<u>③·④</u> (생 략) <u><신 설></u>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u>⑥ 동물보호관은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 대상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41조의2(소유권의 포기) 시·도</u>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
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
4항제2호를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동물의 소유권
을 포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